개호보험법 등을 비롯한 고령자의 보건/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1 개호보험법

1 목적

개호보험법의 목적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노화에 따른 심신상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 입욕, 배설, 식사 등에 대한 개호, 기능훈련, 간호 및 의료상의 관리 등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존엄을 유지하고 자신이 지닌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관련 급부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의 공동연계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설립하고,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험급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의료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것」

즉, 개호보험법에서는 제도의 목적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하 '요개호')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하 '요지원')가 된 사람이 「존엄을 유지하고 자신이 지닌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 급부를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법의 이념으로 정하였다(개호보험법 제1조).

그리고 이 보험급부는 「이용자의 심신 상태, 처한 환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선택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사업자 또는 시설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호보험법 제2조 제3항. 밑줄 친 「이용자」는 법문에서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용자 자신의 선택(자기결정)"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정하고 있다.

2 개호보험제도의 체계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개호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연대와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료 부담과 급부 대응관계가 명확한 「사회보장방식」체계로 되어 있다.

(1) 보험자

이용자와 접하기 쉬운 행정주체 단위인 시정촌(市/町/村)과 특별구(이하 「시정촌」)가 보험자가 되어 개호보험을 운영한다. 그리고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재정적인 측면, 사무측면에서 시정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피보험자

자신의 노후나 부모님에 대한 개호를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게 되는 만 40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①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제1호 피보험자), ②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제2호 피보험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표1-1).

표1-1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자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수급권자	・개호가 필요한 자(요개호자) ・지원이 필요한 자(요지원자)	좌측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초로기(45~60세)인 지증,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의한 것
보험료 부담	・원칙적으로 각 시정촌이 소득단계에 따라 정액보험료를 설정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소득에 따른다.	각각 가입한 의료보험자별로 설정 ・건보: (표준보수+표준상여)×개호보험료율(사업주 부담 있음) ・국보: 소득비율, 균등비율 등으로 안분(국고부담 있음)
부과・징수방법	연금금액이 연간 18만 엔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에서 공제, 그 외에는 일반징수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로 징수하여, 개호급부비・지역지원사업 지원급부금 명목으로 일괄 납부

(3) 주소지 특례

지정-노인개호복지시설 등의 개호보험시설, 특정시설 및 요양노인홈*(주로 생활곤란자 대상)*에 입소하여, 자신의 주소를 시설이 있는 시정촌으로 옮긴 피보험자는 주소를 옮기기 전의 시정촌이 보험자가 되는 특례가 있다. 이를 「주소지 특례」라고 하며, 이는 개호보험 시설이 있는 시정촌의 개호비용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 (수급권자)

시정촌 단위에서 '요개호' 상태(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경우, 인지증이 있거나,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생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 항시적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의 정도를 경감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하기 위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 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요개호 상태로 인정받은 자를 「요개호자」「요지원자」라고 한다.

(5)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 요개호(요지원) 설정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필요한 지 판정하는 것이 「요개호 인정」이다('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필요한 지 판정할 경우에는 「요지원 인정」, 이하 「요개호 인정 등」). 요개호로 인정받게 되면 개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요개호1」부터 「요개호5」까지 5단계(이를 「요개호 상태구분」이라 한다.)로 구분하며, 요지원을 인정받게 되면 「요지원1」과 「요지원2」의 2단계(이것을 「요지원 상태구분」)로 구분한다. 요개호 및 요지원의 차이와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우선 시정촌에 요개호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피보험자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이것을 「인정조사」라고 한다.)하고, 그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실시한 심의・판정을 토대로, 시정촌에서 요개호 등을 인정한다. 요개호・요지원 신청부터 인정까지의 절차는 그림1-1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개호인정심사회가 실시하는 심사판정 의무는, 여러 곳의 시정촌에서 광역적으로 실시하거나 도도부현(상급 행정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2호 피보험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개호 상태(또는 요지원 상태)의 원인인 신체상의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노화에 따른 질병이어야 한다. 이 질병을 「특정 질병▶1」이라고 하는데, 개호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루게릭병) 등 16가지의 질병을 말한다.

▶1 특정질병

①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에 한한다.), ②관절류마티스, ③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④후종인대 골화증, ⑤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⑥초로기(45세~60세) 인지증, ⑦진행성핵상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⑧척추소뇌변성증, ⑨척추관협착증, ⑩조로증, ⑪다계통위축증, ⑫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장질환 및 당뇨병망막증, ⑬뇌혈관질환, ⑭폐색성동맥경화증, ⑮만성폐색성폐질환, ⑯양측 슬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한 변형성 관절증

그림1-1 요개호・요지원 신청부터 인정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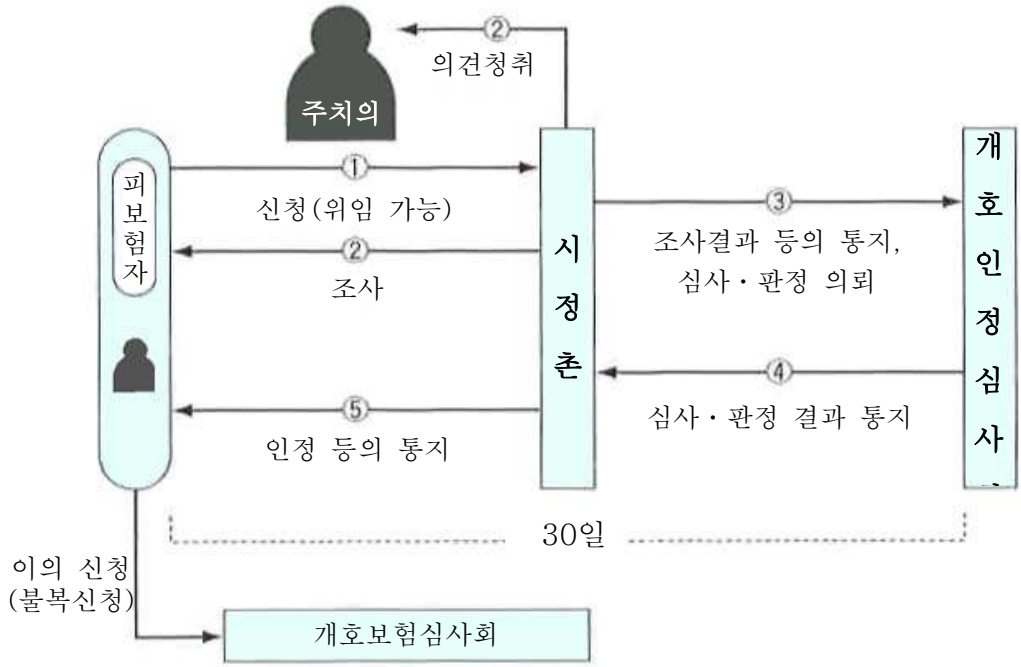

● 거택[居宅]서비스계획・개호예방서비스계획 작성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 중에는 「(이용자의) 선택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사업자 또는 시설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받는다」는 대목이 있다. 이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이 거택개호지원과 개호예방지원이다.

'거택개호지원'이란 거택(거택이란 자택 이외에 양호노인홈, 경비[輕費]노인홈, 유료노인홈의 거실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서 생활하는 '요개호' 상태로 인정받은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의 심신 상태, 생활환경,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을 고려한 다음, 개호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계획을 「거택서비스계획」이라고 하며, 이 업무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개호지원 전문가」라고 한다.

반면에 '개호예방지원'일 경우에는, 거택에서 생활하는 '요지원' 상태로 인정받은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의 심신 상태, 생활환경,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을 고려한 다음 개호예방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개호예방서비스계획」이라 한다. 또한 「개호예방서비스계획」작성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원 중에서, 보건사 등 개호예방지원에 관한 지식을 지닌 자가 실시한다.

그림1-2 거택서비스 계획 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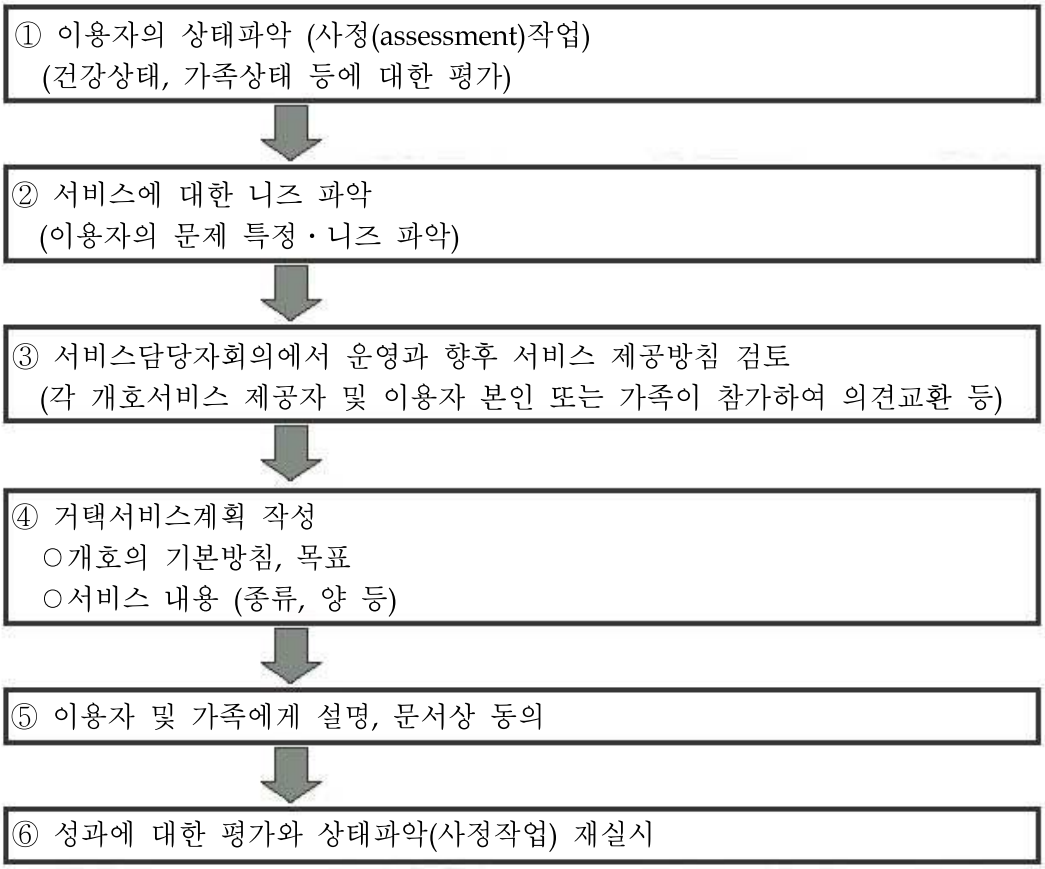

개호서비스 중에서 거택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택서비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호지원 전문가는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 등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이용료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거택서비스계획을 작성한다. 작성 절차는 그림1-2와 같다. 우선 개호지원 전문가는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심신 상태, 생활환경 등을 평가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파악한다. 이어서, 이에 근거한 거택서비스계획 원안을 작성하고, 서비스담당자회의▶2에서 거듭 검토하여, 거택서비스계획을 책정하게 된다. 결정된 거택서비스계획은 내용, 이용료 등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설명해 주고, 문서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자 자신이 거택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2 개호지원 전문가가 거택서비스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이용자와 가족이 참여하고, 원안에 기재된 거택서비스 담당자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6) 보험급부의 종류

보험급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정촌에서 요개호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개호급부」, 요지원자로 인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방급부」, 요개호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의 경감 또는 악화 방지를 도와주는 조례로 정한 「시정촌 특별급부」가 있다.

또한 「개호급부」「예방급부」「시정촌 특별급부」에는 각각 표1-2와 같은 종류가 있다. 법률 상, 개호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가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로 인정된 경우에 개호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급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후에 시정촌으로부터 이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상환받는 방식). 단, 이 중에서 「거택개호서비스 비용」「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 비용」「거택개호서비스계획 비용」「시설개호서비스 비용」「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 비용」「개호예방서비스 비용」「지역말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비용」「개호예방서비스계획 비용」「특정입소자 개호예방서비스 비용」의 9가지는,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시정촌이 이용자 대신 개호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아닌) 「서비스」를 직접 급부하는 셈이 된다(현물 급부 방식).

● 개호급부

이번에는 표1-2의 내용 중에서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 비용, 거택개호 복지용구구입 비용, 거택개호 주택리모델링 비용, 거택개호서비스계획 비용, 시설개호서비스 비용, 고액 개호서비스 비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다.

표1-2 「개호급부」「예방급부」「시정촌 특별급부」의 종류

급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	종류
개호급부	요개호자 (개호가 필요한 자)	①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② 특례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③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 비용 ④ 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 비용 ⑤ 거택개호 복지용구구입 비용 ⑥ 거택개호 주택리모델링 비용 ⑦ 거택개호 서비스계획 비용 ⑧ 특례 거택 개호서비스계획 비용 ⑨ 시설개호서비스 비용 ⑩ 특례 시설 개호서비스 비용 ⑪ 고액개호서비스 비용 ⑫ 고액의료합산 개호서비스 비용 ⑬ 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 비용

		⑭ 특례 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 비용
예방급부	요지원자 (지원이 필요한 자)	①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② 특례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③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④ 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⑤ 개호예방 복지용구구입 비용 ⑥ 개호예방 주택리모델링 비용 ⑦ 개호예방 서비스계획 비용 ⑧ 특례 개호예방서비스계획 비용 ⑨ 고액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⑩ 고령의료합산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⑪ 특정입소자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⑫ 특례 특정입소자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시정촌 특별급부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	개호급부, 예방급부 외에 조례로 정한 것

_____ 부분은 「현물 급부방식」이 가능한 경우

-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택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① 방문개호

② 방문입욕개호

③ 방문간호

④ 방문재활

⑤ 거택요양관리지도

⑥ 통소개호*(通所介護, 시설을 방문해서 받는 데이 서비스)*

⑦ 통소재활

⑧ 단기입소생활개호

⑨ 단기입소요양개호

⑩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⑪ 복지용구대여

-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 비용

시정촌의 장이 지정한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①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②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③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시설을 방문해서 받는 데이서비스)*

④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⑤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⑥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

⑦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⑧ 복합형 서비스

- 거택개호 복지용구구입 비용

입욕 또는 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특정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거택개호 주택리모델링 비용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거택개호 서비스계획 비용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로부터 거택개호지원을 받은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시설개호 서비스비용

다음과 같은 시설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단, 거주비용,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미용 대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① 개호복지시설 서비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② 개호보건시설 서비스 (개호노인보건시설)

③ 개호요양시설 서비스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은 본 텍스트의 38페이지 참조

- 고액 개호서비스 비용

이용자의 자기부담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예방급부

이번에는 예방급부 중에서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 비용, 개호예방 복지용구구입 비용, 개호예방 주택리모델링 비용, 개호예방 서비스계획 비용, 고액 개호예방서비스 비용에 대해 살펴본다.

-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지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호예방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① 개호예방 방문개호

② 개호예방 방문입욕개호

③ 개호예방 방문간호

④ 개호예방 방문재활

⑤ 개호예방 거택요양관리지도

⑥ 개호예방 통소개호

⑦ 개호예방 통소재활

⑧ 개호예방 단기입소생활개호

⑨ 개호예방 단기입소요양개호

⑩ 개호예방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⑪ 개호예방 복지용구 대여

●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시정촌의 장이 지정한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①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② 개호예방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③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 개호예방 복지용구구입 비용

입욕 또는 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특정 개호예방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개호예방 주택리모델링 비용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개호예방 서비스계획 비용

시정촌의 장이 지정한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자로부터 개호예방지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고액개호예방 서비스비용

이용자의 자기부담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 지불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시정촌 특별급부

시정촌에서는 「개호급부」「예방급부」이외에 조례를 통해 독자적인 보험급부를 실시할 수 있다(시정촌 특별급부). 구체적으로는 배식서비스 등이 있다.

(7) 개호보수

앞에서 이미 서술했던 것과 같이,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개호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급부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비용」금액은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 내용이나 요개호 상태 구분, 또는 요지원 상태 구분에 따라 정해진 단위 수에, 1단위당 단가(10엔)을 곱하여 산출한다. 1단위당 단가는 기본적으로 10엔이지만, 해당 지역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7개 지역구분에 따른 가중단가가 존재한다. 또한 이 단위 수라는 것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3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대가로 지불받는 보수를 「개호보수」라고 하다.

또한 복지용구 구입비 및 주택리모델링 비용은 지급한도액(뒤에서 설명) 범위 내에서 실제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또한 실제 개호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이 개호보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급부로 지급받는다.

표1-3 거택서비스 지급한도 기준액

요개호 등급	거택서비스 지급한도 기준액
요개호 1	16,580 단위/월
요개호 2	19,480 단위/월
요개호 3	26,750 단위/월
요개호 4	30,600 단위/월
요개호 5	35,830 단위/월

▶3 지정-거택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0년 2월 10일 후생성고시 제19호)
지정-거택개호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0년 2월 10일 후생성고시 제20호)
지정-시설서비스 등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0년 2월 10일 후생성고시 제21호)
지정-개호예방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고시 제127호)
지정-개호예방지원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고시 제129호)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고시 제126호)
지정-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고시 제128호)

(8) 거택서비스 및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의 비용 관련 지급한도액

지급한도액이란 보험급부로 지급되는 거택개호서비스 비용 및 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1개월 총액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것은 요개호 등급별로 정해져 있으므로(표1-3), 이용자는 1개월에 이용할 수 있는 거택개호서비스 및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서비스량이 정해져 있는 셈이 된다. 한편,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라면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자유로이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급한도액은 서비스의 대체성(일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다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 고려하여, 몇 가지 서비스를 묶어 해당 구분별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통소개호, 통소재활,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이용기간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복지용구 대여,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인지증대응형통소개호,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이용기간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이용기간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복합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보험급부와 자기부담의 합계), 즉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또한 거택요양관리지도,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상기 제외), 특정시설 입거자생활개호(상기내용 제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상기내용 제외),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거자 생활개호는, 다른 대체서비스가 없으므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거택개호 복지용구구입 비용은 동일한 연도에 1종목당 1회에 한하여 10만 엔까지, 거택개호 주택리모델링 비용은 동일한 주택의 경우는 지급한도 기준금액이 20만 엔으로 정해져 있다.

(9) 개호예방서비스 및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의 비용 관련 지급한도액

마찬가지로 개호예방서비스도 보험급부로 지급되는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및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비용 총액이 정해져 있다(표1-4). 지급한도액은 서비스의 대체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서비스를 묶어 해당 구분별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개호예방 방문개호, 개호예방 방문입욕개호, 개호예방 방문간호, 개호예방

방문재활, 개호예방 통소개호, 개호예방 통소재활, 개호예방 단기입소생활개호, 개호예방 단기입소요양개호, 개호예방 복지용구대여,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통소개호, 개호예방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이용기간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보험급부와 자기부담 합계), 즉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또한 개호예방 복지용구구입 비용은 10만 엔까지, 개호예방 주택리모델링 비용의 지급한도 기준금액은 20만 엔까지로 정해져 있다.

표1-4 개호예방서비스 지급한도 기준액

요지원 등급	개호예방서비스 지급한도 기준액
요지원 1	4,970 단위/월
요지원 2	10,400 단위/월

(10) 이용자 부담 (자기부담)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담의 공평성을 꾀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해 비용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관점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용자 부담은 앞에서 서술한 지급한도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이다. 또한 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이미용대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한다.

단, 거택서비스계획과 개호예방서비스계획 작성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보험급부로 하므로 자기부담은 없다.

또한 이용자 부담 금액이 일정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액 개호서비스 비용, 고액 개호예방서비스 비용을 급부한다.

(11) 지역지원사업 (그림1-3)

1. 목적

이용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개호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 이하, 「요개호 상태 등」)이 되는 것을 막고, 개호가 필요해진 경우라도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실시주체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이다.

그림1-3 지역지원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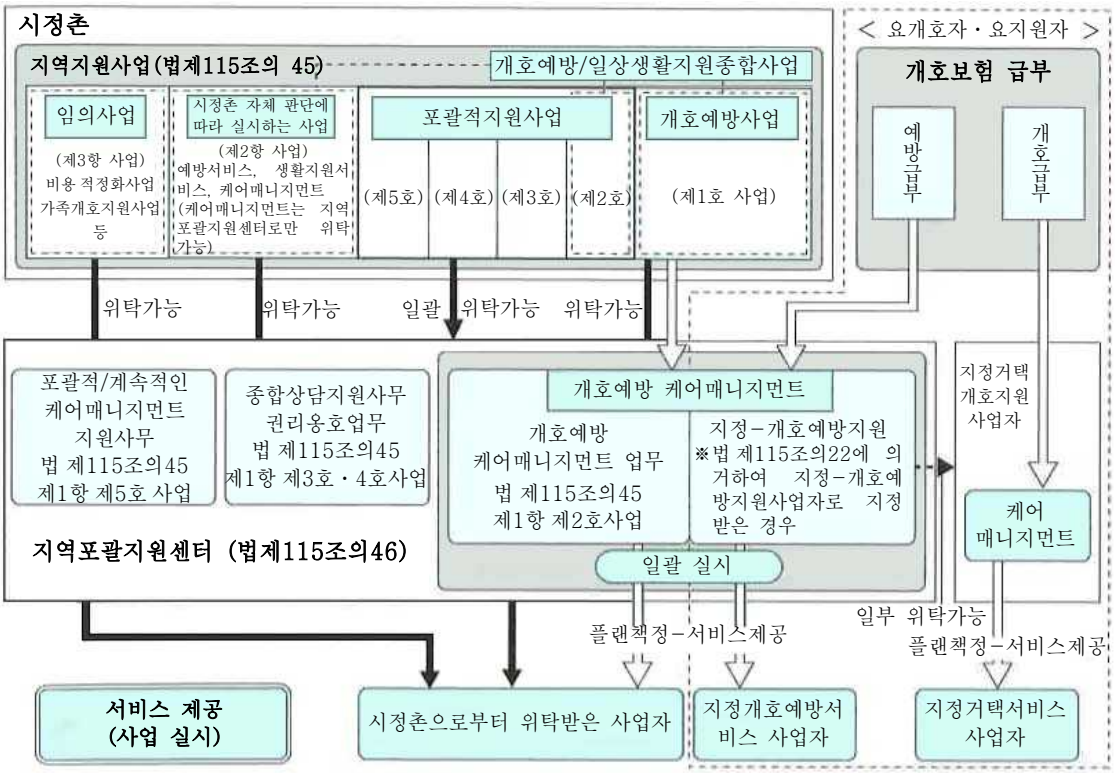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노건국 「전국개호보험담당과장 회의자료」(2005년 6월 27일), 일부 수정(갱신)

3. 사업내용

① 개호예방사업

이 사업의 대상은 제1호 피보험자로, 요개호 상태 등이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를 경감하거나 악화 방지를 꾀하는 사업 중에서 예방급부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호예방사업은 요개호 상태 등이 될 우려가 높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예방사업」과, 일반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예방사업」으로 나뉜다. 2차예방사업에서는 기본체크리스트에 따라 생활기능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운동기관의 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차예방사업에서는 개호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

식보급 및 계발을 위한 팜플렛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 등이 실시된다.

그림1-4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전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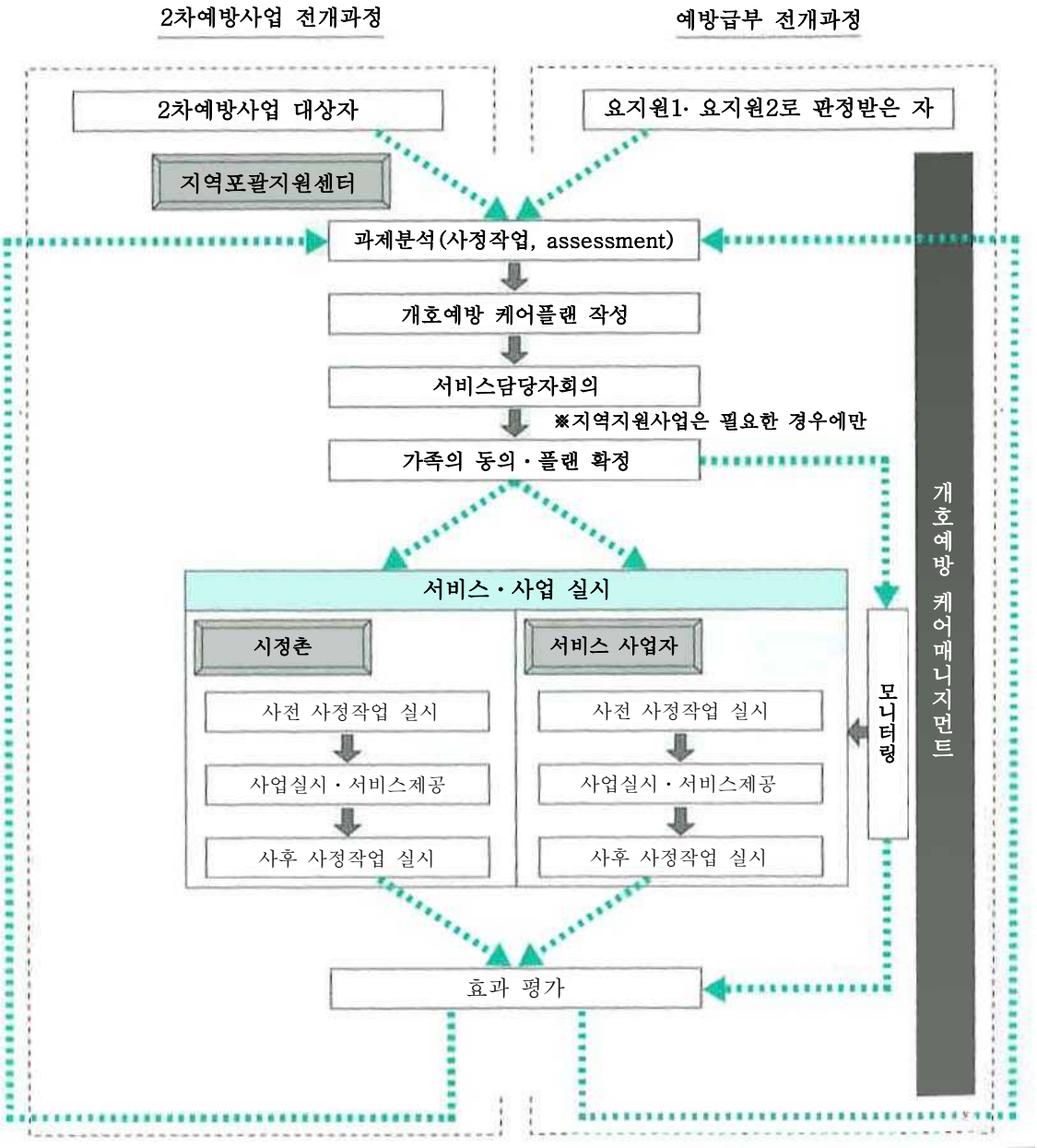

② 포괄적인 지원 사업

•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그림1-4)

①의 「개호예방사업」, 그 외의 적절한 사업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 종합상담지원업무

고령자의 심신 상태, 거택에서의 생활 실태 등 필요한 실정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등 관련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조정하는 등, 이용자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권리옹호업무

고령자의 학대 방지 및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 기타 고령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지원 업무

보건의료 및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가 이용자의 거택서비스계획 및 시설서비스계획을 검증하고, 이용자의 심신이나 서비스 이용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 지역의 개호지원 전문가(케어매니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③ 시정촌의 판단 하에 실시하는 사업

● 예방서비스사업

요지원자・2차예방사업대상자에게 개호예방서비스(방문개호, 통소개호 등) 또는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중에 시정촌이 정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

● 생활지원서비스사업

요지원자・2차예방사업대상자에게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배식,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안부확인 등을 실시하는 사업 중에 시정촌이 정한 사업

● 케어매니지먼트사업

요지원자(개호예방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2차예방사업대상자에게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예방서비스사업 및 생활지원서비스사업 등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④ 임의사업

그 외에 시정촌이 실시하는 임의 사업으로, 개호급부 등의 비용 적정화사업, 가족개호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시정촌의 판단 하에,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 지닌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의 「개호예방사업」, ②의 「포괄적지원사업」중에서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업무」 및 ③의 「시정촌의 판단 하에 실시하는 사업」 모두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4. 지역포괄지원센터

① 목적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지원사업 등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② 설치주체

설치주체는 시정촌 및 시정촌으로부터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개호지원센터 설치자,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는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조직하는 시정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되어 있다.

③ 사업내용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지역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포괄적지원사업(3. 사업내용② 참조)과 지정-개호예방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그 외에 개호예방사업 중에서 ㉮2차예방사업대상자 파악에 관한 사업, ㉯개호예방에 관한 보급계발을 실시하는 사업, ㉰개호예방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의 인재 육성 및 개호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역활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및 ㉱개호예방에 관한 사업 관련 평가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앞에서 기술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전문직종(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가 등)의 인력을 직원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해당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상호 활용하면서 연계(팀케어)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12) 개호서비스정보 공개

개호서비스사업자는 「개호서비스정보」에 대한 공표가 의무화 되어 있다. 「개호서비스정보」란 「개호서비스 내용 및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요개호자

등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해당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본정보」와 「운영정보」, 그리고 임의에 따라 보고하는 「임의보고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1-5)

그림1-5 개호서비스정보 공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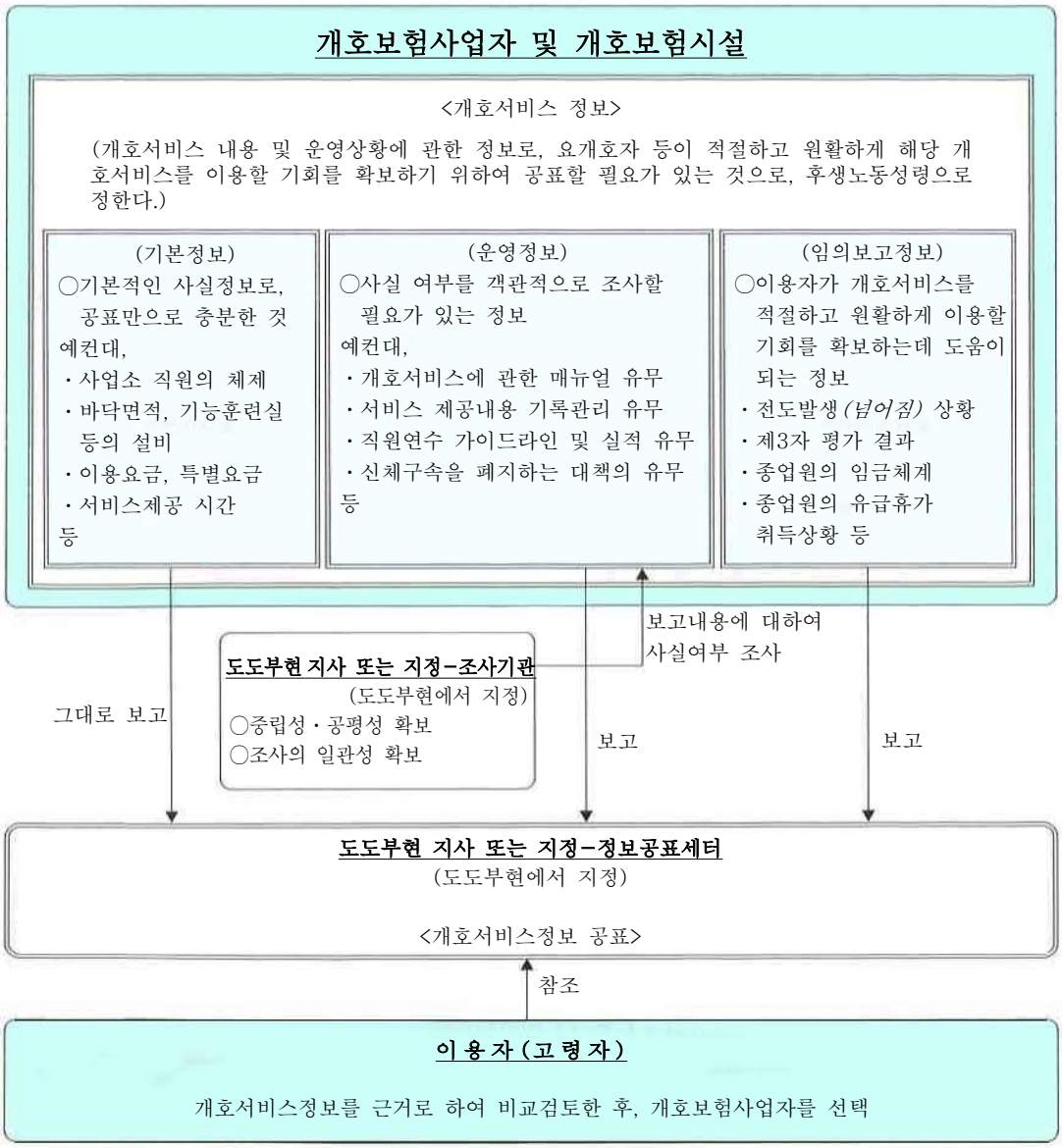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를 일부 수정(갱신)

1. 대상 사업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2. 「개호서비스정보」의 내용

① 기본정보

사업소에서 직접 기입한 것을 그대로 공표한다. 사업소의 연락처 외에 서비스종사자 수나 요금체계, 거실면적, 개인실 유무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가 있는 이용자의 상황」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는 것 등, 공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보이다.

② 운영정보

조사원이 사업소를 방문하고 확인한 사실이 공표된다. 서비스제공 시스템, 직원교육 상황 등, 개호서비스 사업소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운영 등에 관한 시스템을 이용자가 파악하기 위한 정보이다.

③ 임의보고 정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한다. 개호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요개호 개선상황, 욕창 발생상황 등) 및 개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관한 정보(종사자의 이직률, 근무시간, 임금체계 등)로 이용자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이다.

3. 공표의 빈도

새로 지정받은 사업소는 개호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공표하며, 그 이외의 사업소는 년 1회 공표하게 된다.

4. 공표 방법

① 인터넷에 공표

많은 사업자들 정보 중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추려 적절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표한다.

② 사업자가 공표

사업소 내부 또는 시설 내부에 게시하거나, 또는 중요사항 설명서에 첨부한다.

③ 그 외의 방법

종이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사업자 및 시설

●사업자 및 시설 지정

원칙적으로 거택서비스, 시설서비스 및 개호예방서비스의 보험급부는 원칙적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단, 개호노인보건시설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허가)한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 지정-시설, 지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불되며, 지역밀착형서비스 및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는 시정촌장이 지정한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불된다.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은 조례 기준에 따라 거택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 및 지역밀착형서비스,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정하며, 개호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입소정원 30인 이상으로(도도부현의 조례 기준으로 정하는 숫자에 따름) 특별요양노인홈 개설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정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생활개호를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입소정원 29명 이하로(시정촌 조례 기준으로 정하는 숫자에 따름) 특별요양노인홈 개설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정한다. 그리고 시정촌장은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등에 대한 예측량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공모를 실시하여 지정-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다.

사업자 및 시설에 대한 지정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6년마다 갱신하여야 해당 지정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정 간주

단, 개호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다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정 등을 받게 되었을 때는, 개호보험법에 의거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에는 ①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진료소의 거택요양관리지도, 방문간호, 방문재활, 통소재활 및 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개호예방방문간호, 개호예방방문재활, 개호예방통소재활, ②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거택요양관리지도 및 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③개호노인보건시설의 단기입소요양개호, 통소재활 및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개호예방통소재활, ④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단기입소요양개호 및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이다.

●사업자 및 시설 관련 기준

2011년 5월에 「지역의 자율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추진 관련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후생노동성령에 따라 정해졌던 사업자 및 시설 관련 일부 기준들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되었다.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각 서비스 및 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사업소(시설)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직원 수 및 설비,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4」에 따라 정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운영을 개시한 후에 기준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지역밀착형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정촌장)로부터 시정대상 등으로 지정되며, 시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준해당 서비스

거택서비스사업과 거택개호지원사업 및 개호예방서비스사업과 개호예방지원사업은 앞에서 서술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시정촌이 인정하며 해당 서비스는 「기준해당 서비스」로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된다.

(14) 보험료

보험료는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 따라 다르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시정촌별로 소득단계에 따라 정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금액은 보험급부 대상에 해당되는 서비스 예상량 등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보험

▶4 지정-거택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7호)
지정-거택개호 지정 등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8호)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9호)
개호노인보건시설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40호)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41호) ※2012년 3월 31일자로 폐지
지정-지역밀착형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4호)
지정-개호예방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개호예방서비스 등과 관련된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5호)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관련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6호)
지정-개호예방지원 등 사업인원 및 운영 및 지정-개호예방지원 등과 관련된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7호)

급부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대략 향후 3년간 재정적인 균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제2호 피보험자 1인당 전국균일금액에, 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제2호 피보험자 예상 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을 이용한다. 의료보험자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산정하는 방법을 토대로 하여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설정하고, 이를 일반 의료보험료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형태로 일괄 징수한다.

**역자 주 : 건강보험은 회사원이 드는 보험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자가 드는 보험을 말한다.*

(15) 재원구성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자기부담을 뺀 50%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다시 세분화해 보면, 거택 관련 급부비용일 경우에는 국가가 25%(조정교부금 5% 포함), 도도부현이 12.5%, 시정촌이 12.5%를, 시설 등에 관련된 급부비용일 경우에는 국가가 20%, 도도부현이 17.5%, 시정촌이 12.5%를 부담한다.

그림1-6 재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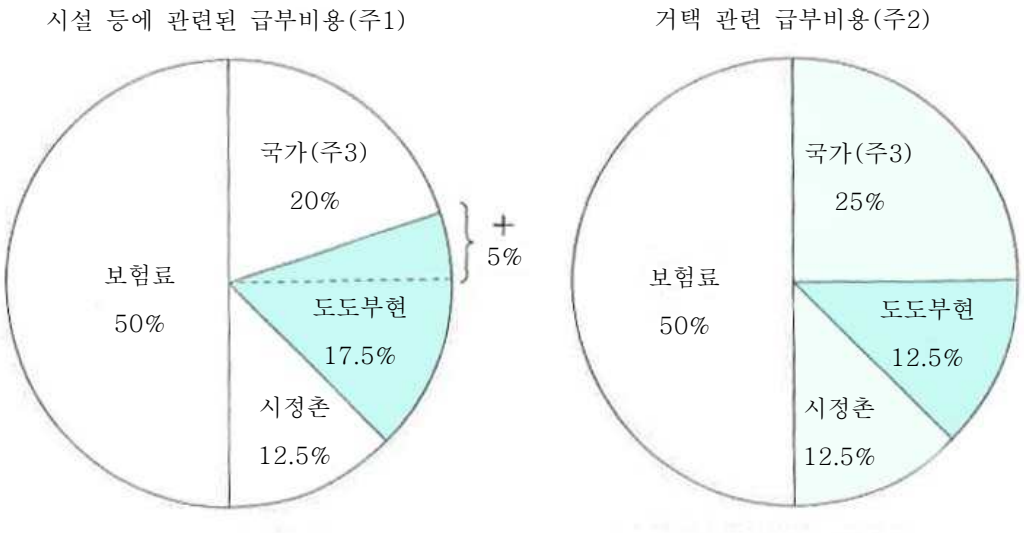

주1 시설 등에 관련된 급부비용이란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권한을 지닌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특정시설과 관련된 급부비용.
주2 거택 관련 급부비용이란 시설 등에 관련된 급부비용 이외의 급부비용.
주3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에는 조정교부금 상당분(5%)을 포함한다.

(16) 개호보험심사회

개호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증 교부에 대한 청구, 요개호 인정 또는 요지원 인정 등, 보험급부에 관한 처분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불복사항)가 있을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개호보험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호보험심사회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시정촌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요개호인정 또는 요지원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조사원을 배치할 수 있다.

(17) 장애자자립지원제도와의 관계

개호보험법의 급부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의거한 서비스 중에서, 양쪽에 공통되는 서비스는 개호보험법의 급부를 우선시한다. 또한 가이드헬프서비스 및 보조기(보장구) 급부 등 개호보험법에 따른 급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는 장애자자립지원법에 따라 제공받는다. (그림1-7)

그림1-7 장애자자립지원제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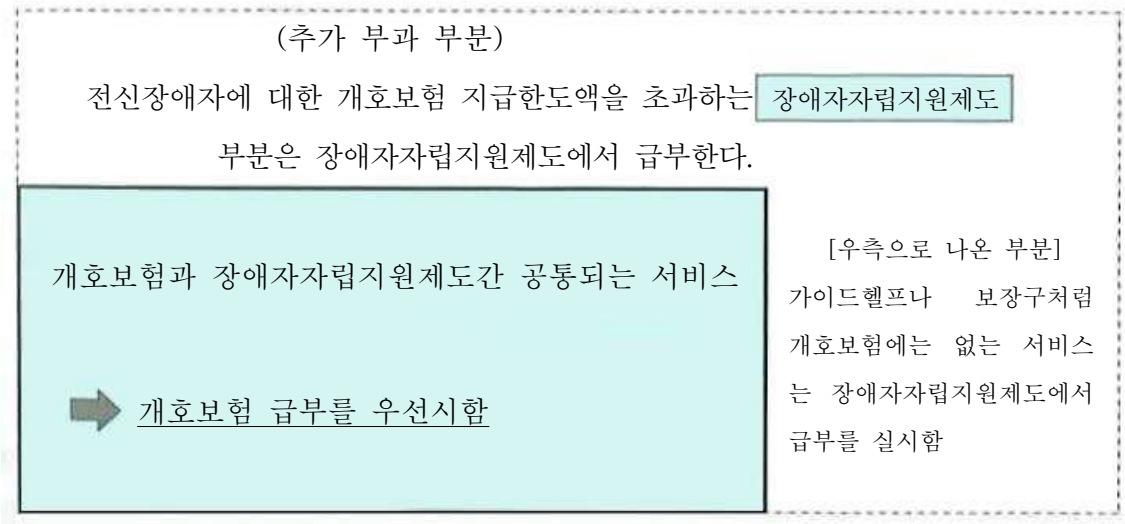

3 개호보험법에 따른 서비스

(1) 거택서비스

보험급부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택서비스」란 다음의 12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개호

② 방문입욕개호

③ 방문간호

④ 방문재활

⑤ 거택요양관리지도

⑥ 통소개호

⑦ 통소재활

⑧ 단기입소생활개호

⑨ 단기입소요양개호

⑩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⑪ 복지용구대여

⑫ 특정복지용구판매

또한 거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택(여기서 말하는 「거택」에는 자택 이외에 요양노인홈이나 경비(經費)노인홈, 유료노인홈의 거실도 포함한다.)에서 생활하는 「요개호」로 인정된 이용자이다.

● 방문개호

방문개호란 방문개호원(홈헬퍼)이나 개호복지사가 거택을 방문하여 「신체개호(①식사 및 배설 개호, ②침대목욕(청식)・입욕개호・신체청결, ③체위변환, 이동・자리옮기기 개호, 외출개호, ④기상 및 취침 개호, ⑤복약 확인, ⑥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관찰방식 지원 등」「생활지원(①청소, ②세탁, ③잠자리 정리, ④의류 정리 및 수선, ⑤일반적인 조리 및 밥상정리, ⑥장보기・약 받아오기 등)」「외래통원 등을 위한 승하차 개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래통원 등을 위한 승하차 개호」란, 병원 등을 방문할 때 방문개호원이나 개호복지사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승/하차 하는 개호와 이와 함께 승차 전, 하차 후의 이동 등에 대한 개호, 통원목적지 또는 외출목적지에서 진료접수 등의 절차, 이동 등의 개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 방문입욕개호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가지고 간 욕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입욕 개호를 말한다. 거택에서 이용자가 입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므로 이용자의 신체청결 유지, 심신기능 유지 등을 꾀한다.

● 방문간호

간호사, 보건사*(공중보건사)*, 준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언어청각사가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요양에 관련된 도움 또는 필요한 진료를 보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병상관찰・관리, ②침대목욕(청식) 등 청결 유지・관리, ③욕창 처치, ④식사개호・영양관리, ⑤카테터 등의 관리, ⑥재활, ⑦터미널케어, ⑧배설개호・관리, ⑨요양지도 이다.

또한 「방문간호」에는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방문간호와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방문간호가 있다. 개호보험법에 의거한 방문간호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요개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증상도 안정기安定期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방문재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언어청각사가 의사의 지시 및 방문재활계획에 따라 이용자의 심신기능 유지회복 및 일상생활 상 자립을 돕기 위하여 물리치료, 작업요법 등 필요한 재활을 실시한다. 또한 재활 관점에서 필요한 요양 관리에 대해,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알기 쉽게 지도 및 설명한다.

● 거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관리영양사,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가 통원이 힘든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처한 환경 등을 파악하고 요양관리 및 지도를 실시한다.

●통소개호(데이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데이서비스센터, 양호노인홈, 특별요양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①입욕・식사(개호 포함), ②생활 등에 관한 상담・조언, ③건강상태 확인 등 필요한 일상생활 상의 도움, ④기능훈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소재활(데이 케어)

이용자가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 진료소를 방문하여 이용자의 심신기능 유지회복 및 일상생활 상 자립을 돕기 위하여 물리치료, 작업요법 등 필요한 재활을 받는다.

●단기입소생활개호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거택에서 개호를 받기 힘들어졌을 때, 특별요양노인홈, 요양노인홈, 노인단기입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서비스(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훈련)를 제공받는다.

●단기입소 요양개호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거택에서 개호를 받기 힘들어졌을 때, 개호노인보건시설, 요양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지료소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를 기본으로 개호, 기능훈련 등 필요한 의료 및 일상생활 상의 개호를 제공받는다.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

특정시설(유료노인홈, 요양노인홈 및 경비輕費노인홈을 말한다. 단,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제외)에 입거하고 있는 요개호자는, 특정시설서비스계획에 의거하여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세탁, 청소 등의 가사, 생활 등에 관한 상담・조언 등 특정시설에 입거한 이용자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상의 도움, 기능훈련, 요양 상의 도움을 제공받는다.

●복지용구대여

적절한 복지용구 선정에 대한 지원・설치・조정 등을 실시하고 표1-5와 같은 복지용구를 대여한다. 이용자 일상생활의 편의를 꾀하고, 기능훈련을 도우며 개호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보아 복지용구를 이용할 것으로는 상정하기 힘든, 요개호 1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에게는, ①특수침대(부속품 포함), ②휠체어(부속품 포함), ③욕창방지 용구 및 체위변환기, ④인지증 노인배회감지기기, ⑤이동용리프트를, 그리고 요개호1~3 등급으로 인정받은 이용자에게는 ⑥자동배설처리장치를 보험급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이용자 등일 경우에는 특수침대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예외가 있다.

●특정복지용구판매

입욕이나 배설 시에 사용하는 특수소변기 등의 복지용구는 대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지용구를 「특정복지용구」라고 하며, 해당 종류는 표1-5와 같다. 구입 시에는 보험급부로 「거택개호 복지용구구입 비용」이 지급된다.

●주택리모델링

이용자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쉽게 이동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며, 거택개호 주택리모델링 비용이 지급된다.

리모델링 대상은 ①안전손잡이 설치, ②문턱 제거, ③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해 바닥 또는 통로바닥의 재료 변경, ④미닫이 도어로 교체, ⑤서양식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⑥기타 ①~⑤의 주택리모델링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주택리모델링이다.

표1-5 ‘복지용구대여’ 및 ‘특정복지용구판매’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

대여하는 복지용구	특정복지용구
① 휠체어	① 좌변기
② 휠체어 부속품	② 자동배설처리장치의 교체가능 부품
③ 특수침대	③ 입욕보조용구
④ 특수침대 부속품	④ 간이욕조
⑤ 욕창방지용구	⑤ 이동용 리프트의 걸이부분
⑥ 체위변환기	
⑦ 안전손잡이	
⑧ 슬로프	
⑨ 보행기	
⑩ 보행보조 지팡이	
⑪ 인지증 노인배회감지기기	
⑫ 이동용리프트(걸이부분 제외)	
⑬ 자동배설처리장치	

(2) 지역밀착형서비스

보험급부로 해당 비용이 지불되는 「지역밀착형서비스」란 다음의 8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택(「거택」에는 자택 이외에 양호노인홈이나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의 거실도 포함된다.)에서 생활하는 「요개호」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가 있는 시정촌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즉, 원칙적으로는 다른 시정촌에 있는 사업소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①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②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③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④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⑤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⑥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⑦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거자 생활개호

⑧ 복합형 서비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 간호

주/야간 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일괄적으로, 또는 각각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정기순회방문과 수시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하나의 사업소에서 방문개호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개호・간호 일체형과, ②방문개호를 실시하는 사업소가 지역의 방문간호사업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간호연계형이 있다.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야간에 정기적인 순회방문을 실시하거나 이용자의 연락을 받고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인지증이 있는 사람이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이용자의 거택에서,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거점에 다니거나 단기간 숙박하거나 하면서 제공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이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에서 제공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지증이면서 「요개호」등급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인지증의 원인질환이 급성 상태(증상이 급격히 나타나거나 진행되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에 입거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 요양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이란 유료노인홈, 요양노인홈 및 경비노인홈을 말하며, 「요개호」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에 한해서 입거할 수 있는 특정시설(「개호전용형 특정시설」)로, 입거정원이 29명 이하인 곳을 가리킨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거자 생활개호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입거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정한 계획(지역밀착형시설서비스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 요양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이란 입소정원이 29명 이하인 특별요양노인홈으로 「지역밀착형 시설서비스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복합형서비스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 등, 복수의 거택서비스 및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조합하여, 의료니즈가 높은 요개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와 개호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거택개호지원

거택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 그 외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의뢰하면 이용자의 심신상태, 처한 환경,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을 고려한 다음,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을 정하는 계획(거택서비스계획)을 입안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보험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소개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돕는다.

거택개호지원을 실시하는 전문인력을 「개호지원 전문가」라고 한다.

(4) 개호보험시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지정-개호요양형의료시설을 말한다.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할 것.

(5) 시설서비스

보험급부로 비용이 지불되는 「시설서비스」는 다음의 3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① 개호복지 시설서비스

② 개호보건 시설서비스

③ 개호요양 시설서비스

※개호요양시설서비스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할 것.

또한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요개호」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이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및 개호복지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이란 특별요양노인홈(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을 정한 계획(시설서비스계획)에 따라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기능훈련, 건강관리 및 요양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개호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개호복지 시설서비스」라고 한다.

이용하는 「개호복지 시설서비스」가 보험급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호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개호노인복지시설(이것을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보건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보건시설이란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을 정한 계획(시설서비스계획)에 따라 간호,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호, 기능훈련, 그 외에 필요한 의료, 일상생활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도도부현지사가 허가한 시설이다.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 제공받는 이러한 서비스를 「개호보건 시설서비스」라고 한다.

또한 개호보건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병상이 안정기에 있고,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한다.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및 개호요양시설서비스에 대하여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이란 요양병상 등이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로,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을 정한 계획(시설서비스계획)에 따라 요양 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호, 그 외의 서비스, 기능훈련, 그 외에 필요한 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개호요양 시설서비스」라고 한다.

2006년 6월에 개정된 「건강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2012년 3월 31일까지 개호노인보건시설이나 특별요양노인홈 등이 개호시설 등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2011년 6월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서, 전환기한을 재검토하여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1일 이후의 신규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개호예방서비스

보험급부로 비용이 지불되는 「개호예방서비스」란 다음의 12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① 개호예방 방문개호
② 개호예방 방문입욕개호
③ 개호예방 방문간호
④ 개호예방 방문재활
⑤ 개호예방 거택요양관리지도
⑥ 개호예방 통소개호
⑦ 개호예방 통소재활
⑧ 개호예방 단기입소생활개호
⑨ 개호예방 단기입소요양개호
⑩ 개호예방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효
⑪ 개호예방 복지용구대여
⑫ 특정개호예방 복지용구판매

또한 개호예방이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의 기본에 해당되는 입욕이나 배설, 식사 등의 동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거나, 또는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거나 할 때, 해당 상태를 경감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호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택(여기에서 말하는 「거택」에는 자택 이외에 요양노인홈이나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의 거실도 포함한다.)에서 생활하는 「요개호」로 인정된 이용자이다.

●개호예방 방문개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개호복지사 등이 주기를 설정하여 제공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을 말한다.

●개호예방 방문입욕개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가지고 간 욕조를 이용하여 기간을 한정하여 실시하게 되는 입욕 개호를 말한다.

개호예방 방문입욕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입욕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호예방 방문간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간호사, 보건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언어청각사가 일정 기간, 거택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요양 상의 서비스 또는 필요한 진료 보조를 말한다.

개호예방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가 이용자의 병상이 안정기에 해당되고 요양 상의 서비스 또는 진료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호예방 방문재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용자의 거택에서 제공하는 재활을 말한다.

개호예방 방문재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가 이용자의 병상이 안정기에 해당되고 심신기능의 유지회복 및 일상생활 상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자택에서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 재활은 진료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의학적인 관리 하에 실시된다.

●개호예방 거택요양관리지도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관리영양사,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가 제공하는 요양 상의 관리 및 지도 등을 말한다.

●개호예방 통소개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 및 기능훈련을 말한다(단,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용자는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호예방 통소재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 진료소에서 실시되는 물리치료, 작업요법, 그 외에 필요한 재활을 말한다.

개호예방 통소재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가 이용자의 병상이 안정기에 있으며 심신기능 유지회복 및 일상생활 상 자립을 돕기 위하여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 및 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 재활은 진료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의학적인 관리 하에 실시된다.

●개호예방 단기입소 생활개호

특별요양노인홈 등의 시설에서 단기간 생활하며,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실시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기능훈련을 말한다.

●개호예방 단기입소 요양개호

개호노인보건시설, 요양병상이 있는 병원・진료소 등의 시설에서 단기간, 생활하고,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간호,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호 및 기능훈련, 그 외에 필요한 의료, 일상생활 상의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호예방 단기입소 요양개호는 이용자의 병상이 안정기에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호예방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

특정시설에 입거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를 담당하는 자 등을 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 기능훈련 및 요양 상의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특정시설이란 유료노인홈, 요양노인홈 및 경비노인홈을 가리킨다. 단, '개호예방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는 특정시설 중에서도 「요개호」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한해서 입거할 수 있는 특정시설(「개호전용형 특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입거자는 이용할 수 없다.

●개호예방 복지용구대여

복지용구 중에서 개호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복지용구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종목은 복지용구 대여 대상(표1-5)과 같으며, 이용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보아 복지용구를 이용할 것으로는 상정하기 힘든 요지원 1・2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에게는, ①특수침대(부속품 포함), ②휠체어(부속품 포함), ③욕창방지용구 및 체위변환기, ④인지증 노인배회감지기, ⑤이동용리프트, ⑥자동배설처리장치를 보험급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이용자 등일 경우에는 특수침대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예외가 있다.

●특정개호예방 복지용구판매

복지용구 중에서 개호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입욕이나 배설 시에 이용하므로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것을 「특정개호예방 복지용구」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종목은 특정복지용구판매 대상과 동일하다.(표1-5)

(7)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보험급부로 해당 비용이 지불되는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란 아래의 3가지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택(「거택」에는 자택 이외에 요양노인홈이나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의 거실도 포함한다)에서 생활하는 「요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로,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는 시정촌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즉, 다른 시정촌에 있는 사업소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①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② 개호예방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③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인지증이 있는 사람이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제공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개호예방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이용자의 거택에서,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거점에 다니거나 단기간 숙박하거나 하면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에서 제공받는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그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이나 기능훈련을 말한다.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요지원2」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인지증이 있는 이용자이다. 또한 인지증의 원인질환이 급성 상태(증상이 급격히 나타나거나 진행되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8) 개호예방지원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의 심신 상태, 처한 환경,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을 고려한 다음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지정한 계획을 입안하고,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호예방지원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직원 중에서 보건사 등 개호예방지원에 관한 지식을 지닌 직원이다.

4 개호보험 상의 복지용구선정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호보험 상의 복지용구

개호보험에 따르면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이하 「요개호자 등」)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용구, 및 요개호자 등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로, 요개호자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용구의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요개호자 등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도구로 급속하게 보급 및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요개호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특수침대나 휠체어가 대여되는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보아 필요성이 적은 복지용구가 급부되기도 하고, 개호보험법의 이념인 자립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급부사례도 눈에 띄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정하도록 하고,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기 힘든 복지용구에 대한 내용도 게시한 「개호보험에서 복지용구 선정 판단기준」이

2004년에 작성되었다. 이「판단기준」에는 각각의 복지용구별로, 해당 복지용구의 특성, 이용자의 상태로 판단하건데「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기 힘든 상태」 및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기 힘든 요개호 등급」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기 힘든 상태」에 대해서는 요개호 인정에서 인정조사항목 및 이용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선택된 선택지별로 정리되어 있다.

단, 이 「판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복지용구 선정 시의 표준적인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복지용구를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기 힘든 경우라고 해도, 이용자 개개인의 생활환경이나 해결 과제 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정조사 중에서 「기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다.

[휠체어 및 휠체어 부속품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
① 일상적으로 보행이 곤란한 자
② 일상생활 범위에서 이동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특수침대 및 특수침대부속품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
① 일상적으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자
② 일상적으로 몸을 뒤집는 것이 힘든 자
[욕창방지용구 및 체위변환기]
일상적으로 몸을 뒤집는 것이 힘든 자
[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기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
① 의사전달, 개호 실시자에 대한 반응, 기억 또는 이해에 지장이 있는 자
② 이동 시에 모든 개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동용리프트(걸이부분 제외)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
① 일상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곤란한 자
②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생활환경에서 문턱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자동배설처리장치 (다음 중에 해당되는 자)]
① 배변 시에 모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자리를 옮길 경우 모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다.

①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태가 쉽게 변하거나, 하루하루 또는 시간대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빈번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되는 자

②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단기간에 고시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자

③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신체에 중대한 위험성 또는 증상이 중증화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학적인 판단 하에 고시에서 정하는 복지용구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또한 ①~③에 해당되어 복지용구 대여하기 위해서는 1) 「의사 의견(의학적인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2) 서비스담당자회의 등을 거친 적절한 케어매니지먼트 결과를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3) 시정촌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제정 경위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고령자 증가 및 가족의식 변화 등에 따라 사회환경은 변해가고 있었지만,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국민연금법(1959년 제정)을 필두로 하는 노령연금 지급과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양노시설*(양노원)*에 입주하는 것을 제외하면, 생활보호, 의료보험, 기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책 정도만 실시되는 정도였다.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에 비하면 고령자복지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인복지법은 고령자복지에 관한 제반 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목적과 기본적인 이념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제1조에 「노인 복지에 관한 원리를 명확히 하고,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로써 노인의 복지를 꾀할 것」라고 되어 있다.

또한 기본 이념으로는 제2조 및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노인은 오랜 세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2조)

「노인은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심신변화를 자각하고,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제3조 제1항)

「노인은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일에 종사할 기회 등 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3조제2항)

3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한 서비스

노인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서비스로는 「거택 개호 등」「노인홈에 입소 등」등이 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을 확보해 둔 사업이나 도도부현, 시정촌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있다.

(1) 거택 개호 등 (제10조의4)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거택생활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필요할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노인거택개호 등의 사업
- 노인데이서비스사업
- 노인단기입소사업
-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사업
- 인지증대응형 노인공동생활 원조사업
- 복합형서비스복지사업

(2) 노인일상생활용구 급부 등의 사업 (제10조의4)

원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및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신체의 기능저하 방지와 개호보조를 위하여 일상생활용구를 급부(대여)한다. 급부품목은 전자조리기*(인덕션레인지)*,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노인용전화이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시정촌(특별구 포

함)이다.

(3) 노인홈 입소*(입주)* 등 (제11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홈 입소 등」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정촌은 필요할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호노인홈 입소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

・양호위탁

또한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 및 특별요양노인홈 입소는, 예컨대 학대를 받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해 개호보험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4) 케어 하우스 (제20조의 6)

케어하우스란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는 경비輕費노인홈을 말하며 입소자의 생활상담 등에 응하고 입욕, 식사를 제공하며, 긴급 시에 대응 가능한 시설이다. 입소자가 개호를 필요로 하게 되거나, 해당 상태가 중증이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파견하는 방문개호원(홈헬퍼)을 받는 등의 재택복지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처하도록 되어 있다.

케어하우스는 휠체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등, 고령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와 설비, 면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이곳의 이용은 입소자와 시설의 직접 계약에 따른다.

(5) 유료노인홈 (제29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유료노인홈은 「노인이 입주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입욕, 배설, 식사 개호, 식사 제공, 기타 일상생활 상 필요한 편의를(이하 「개호 등」) 제공(다른 곳에 위탁하여 제공할 경우 및 향후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시설, 인지증대응형 노인공동생활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주거 등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요양노인홈과는 달리 민간 주체로 설치 및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식사, 조언, 건강관리, 치료 협력,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항태가 되면,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6) 생활지원하우스(고령자생활복지센터) (2000년 노발老發제655호)

생활지원하우스(고령자생활복지센터)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거택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에게, 필요할 경우 주거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이나 조언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용절차를 도와주며 긴급 시 대응법을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기도 하고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거주부문과 관련해서는 대략 60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자, 부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자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운영사업의 실시 주체는 시정촌이다(단, 개호보험법으로 규정된 지정통소개호사업소 등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1 '노인건강제도'에서 '고령자의료제도'로 발전

일본은 고령자에 대한 의료를 노인보건법▶5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건강 유지와 적절한 의료 확보를 꾀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만 40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등의 보건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 급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료비는 보험자의 반출금과 공공비용, 그리고 고령자의 자기부담으로 조달된다. 한편 본 법률 제도는 시정촌에서 운영해 왔는데 ①반출금 중에서 현역 세대 보험료와 고령자의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현역세대와 고령세대의 비용부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②보험료 결정 및 징수주체와 급부주체가 다른데다,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5 2006년에 제정된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목 명칭이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에 대한 의료제도는 노인보건법에 의존해 왔던 기존 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독립된 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만들어, 고령자의 보험료와 뒷받침하고 있는 현역세대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모든 시정촌이 가입하는 도도부현 단위의 광역연합이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만 65세부터 만 74세에 해당되는 전기前期고령자에 속하는 피고용자는 퇴직하게 되면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해당)*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자 간에 의료비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 목적과 기본적인 이념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1조에 「고령기 국민의 적절한 의료 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의료비 적정화 추진 계획 작성 및 보험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 고령자의 의료는 국민공동연대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전기고령자 관련 보험자 간의 비용부담 조정, 후기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급부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고령자복지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기본 이념은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국민은 자조自助와 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노화로 인한 심신 변화를 자각하고,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고령자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국민은 연령,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직장이 있는 지역, 또는 주거지 지역, 또는 가정에서, 고령기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특정건강진단・특정보건지도

(1) 특정건강진단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만4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회사원 가입)* 피보험자 및 건강보험*(자영업자 가입)* 등의 피보험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은 내장지방의 축적(내장지방형비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

으며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당, 고혈압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발증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런 상태를 메타볼릭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해당자 및 예비군인 사람에게 운동습관이나 균형 잡힌 식생활 정착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하여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그리고 이것이 중증화된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발증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특정건강진단은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발증이나 중증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메타볼릭신드롬에 착안하며, 해당자 및 예비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정보건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2) 특정보건지도

특정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보건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특정보건지도」라고 한다. 이것은 대상자 스스로가 생활습관 상의 과제를 인식하여 행동 변화와 자기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1) 운영주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만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급부를 실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된 의료보험제도이다.

운영주체는 도도부현 단위 아래에 있는 전체 시정촌이 가입하는 광역연합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도도부현 단위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광역연합은 보험료 결정, 의료급부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무상의 책임을 지는 운영주체가 되므로 후기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자라고 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광역연합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①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②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고령자 중에서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자 등 광역연합에서 인정한 고령자이다.

(3) 재원 구성

환자의 자기부담을 제외하고, 현역세대(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등의 피고용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40%, 및 공공 부문은 약 50% 등이며, 고령자로부터 폭넓게 적은 보험료를 징수한다(10%).

또한 자기부담은 소요된 의료비의 10%(현역 및 소득자는 30%)이다.

5 후기고령자 의료급부

후기고령자의 의료급부는 ① 요양 급부, ② 입원 시 식사요양비, ③ 입원 시 생활요양비, ④ 보험 외 병용요양비, ⑤ 요양비, ⑥ 방문간호요양비, ⑦ 특별요양비(피보험자가 자격증명서 교부를 받은 경우 급부), ⑧ 이송비용, ⑨ 고액요양비, ⑩ 고액개호합산요양비이다.

4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복지용구법)

1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은 제1조에 「심신 상태가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애자의 자립 촉진 및 이러한 자의 개호를 실시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로써 이러한 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 향상이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복지용구의 정의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이나 심신장애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용구, 및 이러한 자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 및 보조기(보장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2조).

표1-6 개호보험법으로 규정된 보험급부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

대여되는 복지용구 대여되는 개호예방복지용구	특정복지용구 특정개호예방복지용구
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방지용구, 체위변환기, 안전손잡이, 슬로프, 보행기, 보행보조지팡기, 인지증노인배회가지기기, 이동용리프트(걸이부분 제외), 자동배설처리장치	좌식변좌, 자동배설처리장치의 교체가능부품,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이동용리프트의 걸이부분

표1-7 노인일상생활용구

품목
전자조리기*(인덕션레인지)*,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노인용전화

3 복지용구의 종류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 복지용구의 범위는 폭넓다. 여기에서는 개호보험법으로 규정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표1-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상생활용구(표1-7)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또한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에서는 복지용구를 ①치료훈련용구, ②의지(의수족)・장구(교정기구), ③퍼스널케어 관련 용구*(세정 등 개인용품)*, ④이동기기, ⑤가사도구, ⑥가구・창호, 건축설비, ⑦커뮤니케이션 관련 용구, ⑧조작용구, ⑨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⑩레크리에이션용구, ⑪기타의 11가지로 분류하였다.